



보도 일시	2022. 11. 16.(수) 조간	배포 일시	2022. 11. 14.(월) 16:00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은행과	책임자	과장 강영수 (02-2100-2950)
		담당자	사무관 서준 (02-2100-2951)

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과 비금융간의 융합·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.

- 「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」 및
「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」 보고·논의 -

주요 내용

- 11.14일(월), 「금융규제혁신회의」는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①금산분리 및 ②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.
- ① (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) 금융회사와 비금융분야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**금융회사의 자회사 출자범위 및 부수업무** 개선방향을 논의
 - 현행 나열식으로 규정된 자회사 출자범위 및 부수업무를 **일부 추가 나열하는 방안** 뿐만 아니라, **전면 네거티브화**하는 방안 등을 논의
- ② (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)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**규율체계를 정비**하고 **위탁이 가능한 업무범위를 확대**하는 방향을 논의
- 금융규제혁신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방안을 마련하고, 금융업권, 핀테크·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·심의할 계획입니다.

1. 안건 주요 내용

보고안건1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

◆ 금산분리 제도 중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범위를 확대·개선하여 금융-비금융 융합을 촉진하고 상호간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나가겠습니다.

1. 추진배경

- 금산분리는 금융자본(금융회사)과 산업자본(비금융회사)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원칙으로, 금융안정, 이해상충 방지, 경제력 집중 억제 등을 위한 우리 금융제도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.
- 그러나, 최근 디지털화와 빅블러 현상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, 금산분리 제도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증하고 있습니다.
- 금융안정 유지 등을 위한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, 금융산업이 디지털화와 빅블러 등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.

2. 검토방향

-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를 추가 보완하는 방식부터 네거티브 전환을 하면서 위험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.

[제1안] 포지티브 리스트 확대

- **[방안]** 현행과 같이 부수업무, 자회사 출자가 가능한 업종을 열거(positive 방식) 하되, 기존에 허용된 업종(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등)외에도 디지털 전환 관련 신규업종, 금융의 사회적 기여와 관련된 업종 등을 추가하는 방안입니다.
- **[장점]** 감독규정 개정 및 유권해석으로 신속히 추진할 수 있고,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에 따른 리스크를 제한*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* 금융회사가 본업보다 비금융업에 집중하거나, 본업과 관련성이 낮은 비금융업 영위에 따른 이질적인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 등
- **[단점]** 새로운 업종 추가에는 규정 개정, 유권해석 등의 별도조치가 필요하고, 이 과정에서 법령의 위임 범위 내인지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.

[제2안] 네거티브 전환 + 위험총량 규제

- **[방안]** 상품 제조·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되, 위험총량 한도(자회사 출자한도 등)를 설정하여 비금융업 리스크를 통제하는 방안입니다.
 - 위험총량 규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한도 위반에 대비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도 필요합니다.
- **[장점]** 새로운 업종이 출현하더라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하고 금융회사가 다양한 비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인력·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- **[단점]** 법률 개정이 필요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, 본업 관련성이 낮은 비금융업 영위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관리 부담이 증가하거나 금융부문에 전이될 위험성도 존재합니다.
 - 아울러,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수행 과정에서 중소기업·영세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갈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.

[제3안] 자회사 출자는 네거티브화 + 부수업무는 포지티브 확대

- **[방안]** 자회사 출자와 부수업무를 분리하여 자회사 출자는 제2안에 따라, 부수업무는 제1안을 따르는 방식입니다.
- **[장점]** 금융회사 본체와 자회사를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과 리스크 수준에 맞게 규제를 설계할 수 있고,
 - 금융회사 본체가 직접 수행하는 부수업무는 보수적으로 확대하여 리스크와 이해상충 우려를 경감하고, 자회사 출자는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.
- **[단점]** 자회사 출자 관련 네거티브화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여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, 자회사를 통한 다양한 비금융업 수행에 따른 리스크 관리 부담 증가, 이해관계자간 갈등 소지 등이 있습니다.

보고안건2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

◆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규율체계 개선, 위탁범위 확대 등을 통해 업무위탁을 활성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효율적 자원배분에 기여하겠습니다.

1. 추진배경

- 업권에 따라 업무위탁 근거규정이 상이하고,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 여부도 달리 적용되고 있어, 업무위탁 제도개선을 검토하고자 합니다.
-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에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고,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 타 업권은 「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'업무위탁규정')이 적용되는 등 근거규정이 상이하고,
 - ※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위탁은 「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」(이하 '정보처리위탁규정')이 적용되나,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.
- 최근 정비된 자본시장법은 내부통제 등을 제외한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, 업무위탁규정은 원칙적으로 본질적 업무*의 위탁을 금지하고 있는 등 업무위탁 범위가 상이하야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.
 - * 금융회사가 인허가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한 업무 / (예시) 대출 업무 중 대출모집, 대출 서류접수 등은 비본질적 업무이고, 대출심사·결정, 대출금 지급은 본질적 업무

2. 검토방향

- 업무위탁규정의 상위법 위임근거를 마련할지 여부, 업무위탁 규율체계를 통합·일원화할지 여부, 업무위탁규정상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허용 방식, 수탁자에 대한 검사권한 신설 여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.

가. 상이한 규율체계 및 법적 구속력

- 자본시장법과 달리 업무위탁규정은 상위법 위임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이 불명확한 상황이므로 ①상위법 위임근거를 마련할지 여부와 ②업무위탁 규율체계를 통합·일원화할지 여부를 검토해나가겠습니다.
- ①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위법 위임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업권 자율성을 존중하여 지침·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.
- ② 동일행위-동일규제 차원에서 복잡·이원화된 규율체계를 통합·단순화하자는 의견과 일원화시 업권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곤란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규정의 정비·보완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.

나. 업권간 상이한 업무위탁 범위

- 자본시장법은 본질적 업무(내부통제, 위험관리 등 제외)의 위탁을 허용하고 있으나, 업무위탁규정(은행, 보험 등)은 본질적 업무의 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핀테크와의 협업 등이 제한*되고 있습니다.

* (예시) 은행의 본질적 업무(대출심사) 중 일부인 담보가치평가 업무를 부동산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보유한 핀테크에 위탁하려 하는 경우, 제도상 불가

- 이에 따라, 금융회사가 디지털화, 신기술 도입 등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본질적 업무에 대해서도 업무위탁을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.
 - 그 방식에는 ①현행 본질적 업무를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로 분류하고 비핵심업무만 위탁을 허용하는 방식, ② 본질적 업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위탁을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(전면 네거티브화) 등이 있습니다.

다. 업무위탁 관련 리스크에 대한 관리·감독 강화

- 특정 외주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해당 기업 장애 발생시 다수 금융사 서비스가 차질을 겪거나, 외주기업의 과점적 지위로 다른 기업으로의 전환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습니다.

- 또한, 업무위탁규정은 수탁자에 대해 간접적인 통제* 방식을 취하고 있어, 사실상 구속력이 없으므로 실효성 있는 감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.

* 금융회사가 위탁계약 체결시 수탁자의 검사 수용의무를 계약내용에 포함하도록 함

- 이에 따라,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업무위탁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고 이사회 보고 등 사후 관리하도록 관리책임을 명확화하고 수탁자 선정 절차·모니터링 등 제3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.

- 수탁자에 대한 검사권한 신설 여부에 대해 (필요)수탁자 직접조사, 계약해지 명령 등 수탁자 관리를 강화하자는 의견과 (불필요)업무위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의 관리책임으로 두자는 의견 등을 검토하겠습니다.

2. 향후 계획

- 금산분리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오늘 금융규제혁신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방안을 마련하고
 - 금융권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(산업부, 중기부, 과기부 등)와 협의를 진행하고, 핀테크산업협회,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
 - 내년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·심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.

- 업무위탁 제도개선 역시 금융업권 및 핀테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안을 구체화하여, 내년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상정·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은행과	책임자	과 장	강영수 (02-2100-2950)
		담당자	사무관	서 준 (02-2100-2951)
<공동>	금융위원회 보험과	책임자	과 장	신상훈 (02-2100-2960)
		담당자	사무관	노소영 (02-2100-2961)
<공동>	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	책임자	과 장	오화세 (02-2100-2990)
		담당자	사무관	박준상 (02-2100-2992)
<공동>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	책임자	과 장	변제호 (02-2100-2830)
		담당자	사무관	송병민 (02-2100-2835)
<공동>	금융감독원 감독조정국	책임자	국 장	정우현 (02-3145-8170)
		담당자	팀 장	김정훈 (02-3145-8180)

1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

1. 금산분리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?

□ 금산분리 제도는 크게 금융과 비금융 상호간 소유-지배 제한, 금융자본의 비금융업 영위 금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① **[소유-지배 제한]** ⁱ⁾산업자본은 은행 주식을 4%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이 금지(의결권 미행사시 10%까지)되어 있고, ⁱⁱ⁾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 주식을 일정비율*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.

* (은행법·보험업법·저축은행법) 비금융회사의 주식 15% 초과 소유 금지
(금산법 제24조) 동일계열 금융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특정 비금융회사 주식 20% 초과 소유하는 것이 금지(단, 사실상 지배인 경우에는 5%, 10%, 15% 초과 소유가 금지)

② **[영업행위 제한]** 금융회사는 법에서 허용된 금융업에 부수되는 업무(부수업무)만 수행할 수 있어, 비금융업 영위에 한계가 있습니다.

③ **[의결권 제한]**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금융회사가 동일 집단내 비금융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.

2. 금산분리 제도 중 어떤 것을 개선한다는 것인지?

□ 금번 제도개선은 금융산업이 금융의 디지털화 및 금융과 비금융간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므로

○ 이와 관련된 ①금융회사의 자회사 출자 제한, ②금융회사의 부수업무에 대한 개선에 집중할 계획입니다.

3.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 중 어떤 방안을 결정할 것인지?

-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의 논의를 바탕으로 방안을 마련하여, 산업부, 중기부 등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핀테크산업협회,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나가겠습니다.
-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의견 소통을 거쳐 '23년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 방안을 상정·심의하겠습니다.

4. 금산분리 제도개선시 그룹내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 자금지원 수단으로 쓰이는 것 아닌지?

- 이미 은행법, 보험업법은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등의 규정이 있어, 특정 회사에 대한 과도한 자금지원이 금지되어 있습니다.
- 또한, 금번 방안 중 네거티브화 방식에는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와 같은 위험총량을 규정하고 있는 등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- 추가적인 리스크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는 향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.

5. 금번 제도개선이 금산분리 자체를 완화하는 것인지?

- 금번 제도개선은 금융의 디지털화 촉진 및 금융업과 비금융업간 시너지 제고를 위한 조치로서, 금산분리 제도 자체를 완화하는 것이 아닙니다.
-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기본 원칙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, 앞으로도 금융안정을 위한 금산분리의 기본 틀을 굳건히 유지하겠습니다.

2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

1. 업무위탁 제도는 무엇인지?

- 「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는 금융회사가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무, 겸영업무, 부수업무 등의 영위를 위해 제3자(개인을 포함)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의미(규정 § 2②)합니다.
- 통상적인 업무 위·수탁은 민·상법에 의해 규율되나,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에 대해서는 인허가제 형해화 방지, 리스크 관리,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관련 규정 또는 법률로 규율하고 있습니다.

2. 자본시장법을 제외하고 업무위탁규정만 개선하는 이유는?

- 자본시장법은 최근에 정비('20.5월 개정)된 바 있고, 업무위탁규정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고 본질적 업무도 업무수행을 위한 인허가 등을 받은 자에 대해 위탁도 허용하고 있는 등 개정 필요성이 크지 않습니다.
- 반면, 업무위탁규정은 상위법상 명확한 위임근거가 없어 법적 구속력이 불명확하고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,
 - 은행·보험사 등의 업무위탁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선방안을 검토·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.

3. 본질적 업무 위탁을 허용하면 인허가 제도가 유명무실화되는 것 아닌지?

- 이미 자본시장법에서도 내부통제, 위험관리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또한, 본질적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허가를 가진 제3자에 한하여 위탁을 허용하는 만큼, 인허가 제도가 유명무실화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

4. 수탁자에 대한 직접조사권, 계약해지요구권은 과도한 것 아닌지?

- 이미 자본시장법에는 수탁자에 대한 직접 조사권, 위탁계약의 취소·변경 명령권 등이 규율되어 있어, 이를 다른 업권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.
- 특히, 업무위탁이 특정사로 편중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적 통제*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관련 방안 도입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.

* 금융회사가 위탁계약 체결시 수탁자의 검사 수용의무를 계약내용에 포함하도록 함